

1. 개정이유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477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별 제출서류 구분 및 세부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작성 시 한글이 서툰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영문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및 영문 국외여행 허가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부담 치료 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 서식 신설(안 제113조 및 별지 제139호의5서식 신설)

국가부담 치료 대상에 병역판정검사등 검사를 위한 이동·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세부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서식 정비(별지 제14호의3서식)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하단에 실제 제공되고 있지 않은 병역판정검사장 약도 문구를 삭제하고, 통지서 상단에 QR 코드로 제공하는 등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통지서 서식 정비(별지 제86호서식)

통지서에 입영부대와 훈련장소가 함께 명시되어 훈련에 참석하는 예비군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라.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서식 개정(별지 제103호의2서식)

취업 사유 입영일자 연기 신청 시 고등학교 졸업 이하자만 신청하도록 한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제출 서류 종류 및 용어를 일부 개선하고자 함.

마. 병무용진단서 질병분류기호 등 세부 정보 기재란 신설(별지 제106호 서식)

병무용진단서에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진단서’에 포함된 질병분류기호, 임상적 추정 또는 최종진단 여부 내용을 추가하고, 병무용진단서 하단에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문구를 추가하기 위함.

바. 국외여행 허가 영문신청서 신설 등 민원서식 개선(안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 및 제111조의2, 별지 제132호서식, 제134호서식 개정, 별지 제132호의3서식 및 별지 제134호의2서식 신설)

국외여행 허가 영문신청서, 국외여행 영문 허가서 서식 신설 및 현행 민원서식의 간소화를 통한 민원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사.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서식 정비(별지 제115호의2서식)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서식에 담당자 성명 및 전화를 기재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 조회 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 중 “별지 제132호서식”을 “별지 제132호서식(영문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132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34호서식”을 “별지 제134호서식(영문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09조 중 “별지 제132호서식”을 “별지 제132호서식(영문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132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별지 제132호서식”을 “별지 제132호서식(영문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132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34호서식”을 “별지 제134호서식(영문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11조의2 중 “별지 제132호서식”을 “별지 제132호서식(영문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132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5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이미 치료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153조제1항 및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38호서식의 부상(질병)확인서, 별지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
2. 영 제15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38호서식의 부상(질병)확인서, 별지 제139호의5서식의 치료(치료비 지급)신청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86호서식, 별지 제103호의2서식, 별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15호의2서식, 별지 제132호서식 및 별지 제1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2호의3서식, 별지 제1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9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 및 별지 제139호의5서식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앞쪽)

보내는 사람

검사장
가는길
(QR)

받는 사람

이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5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통지번호: _____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통지내역	검사 일시	년 월 일(시 분)
	검사 장소	○○병역판정검사장(○○시·도 ○○시·군·구 ○○읍·면·동)

「병역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병역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병역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입영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귀하께서는 입영(소집)하기 전 현역병 복무 또는 군사교육소집 적합여부 검사를 위해 입영판정검사를 받으실 대상이며, 입영판정검사 시 지참물을 안내드립니다.

대상자	내용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국가가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이 첨부된 것) ◦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된 나라사랑 카드
기술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만 해당합니다)	◦ 기술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질병을 앓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 병무용 진단서 ◦ 수술 등 기록지 사본 ◦ 최근 촬영한 의료영상자료(방사선필름 등)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진단서 첨부 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병역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병역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일 전에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6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소집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 병역판정검사 이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등으로 입영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비지급 안내

- 입영판정검사 여비는 병무청장이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받은 신용카드(이하 “나라사랑 카드”라 합니다)의 결제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나라사랑카드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여비를 지급 받을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입영판정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

"캐릭터
또는 로고"

받는 사람

○ 전화상담 ☎ 1588 - 9090

⇒ 0번 (병무민원상담)

○ 병무청 누리집

<https://www.mma.go.kr>

[평시 훈련용]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입영구분
통지번호		☐ 개별입영 ☐ 차량수송
성명	생년월일	군번
주소(예비군부대)		
입영일시(훈련기간)		
훈련장소		
차량탑승 장소/시간		
「병역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에 따라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개별입영 대상은 입영일시까지 훈련장소로 입영해야 하며, 차량탑승 대상은 탑승시간까지 탑승장소로 모여야 합니다.		
이 통지서를 대리수령하고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때는 6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동원훈련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입영시간이 지나서 도착하거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공인자격증, 여권 등)이 없는 경우 입영할 수 없으며 무단불참으로 간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입영 하실 때 준비물 :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2. 훈련 복장은 군 전역 시 지급받은 베레모(또는 전투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등을 착용해야 하며 훈련 복장을 미착용하거나 미지참한 경우는 훈련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강제 귀가 등 불이익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체형 변화로 전투복이나 전투화가 맞지 않더라도 착용 또는 지참하고 입영하시면 동원훈련소집부대(훈련장)에서 체형에 맞는 것으로 대여해 주거나 교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세부내용 뒷면 참조)
3.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동원훈련에 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되며, 타인을 대리해 훈련에 참석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속임수를 쓴 본인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휴무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5. 동원훈련 참가를 위해 훈련부대나 차량탑승 장소로 이동 중(훈련 중, 훈련종료 후 귀가 중 포함)에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동원훈련 입영 안내 및 유의 사항	
훈련장소 교통편	1. 훈련장소 교통편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 일자/교통편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소집부대장이 입영안내 서신으로도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보안상 누리집에 공개가 곤란한 일부 부대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안내 서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소집 통지서	1. 통지서를 분실한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전시근로)소집통지서 출력」'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훈련소집통지서를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훈련소집통지서를 모바일앱 · E-mail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모바일앱 · 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수령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영방법 변경신청	1.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 받았지만 출장 등 부득이 하게 개별입영을 해야만 하는 사람, 개별입영 대상자로 통지받았지만 수송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차량수송 부대에 한함)은 입영방법 변경 신청을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입영방법(개별/차량)변경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이 사전에 변경신청 없이 개별 입영한 경우에는 통지된 대로 차량탑승에 준하는 여비가 지급됩니다.
입영여비 지급	1. 입영여비는 훈련이 끝난 후 소집부대장이 퇴소여비 및 훈련보상비와 함께 지급합니다. 2.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은 거주지에서 차량탑승 장소까지 대중교통요금만 지급됩니다. 3. 입영하기 전에 부득이 하게 입영여비가 필요한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 사전 여비지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영일자 연기신청	1. 질병치료, 취업 · 채용시험 응시, 주요업무수행, 면허 · 자격시험(운전면허 · 워드프로세서 · 컴퓨터 활용능력 · 생업이나 취업과 관련이 적은 교양분야 및 그 밖의 연중 상시 접수 또는 상시 검정 면허 · 자격시험에 응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등의 사유로 동원훈련 입영일자에 입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훈련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연기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방법)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 우편, FAX, 방문 접수 ※ 연기사유별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소집점검) 연기신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주요업무수행, 자격·면허시험응시 및 국외출국 예정 사유로 인한 훈련연기는 예비군 편성기간 동안 통틀어 2회로 연기 횟수가 제한됩니다. 2. 소집부대장의 「입영안내 서신」을 받고 소집부대에 불참의사를 전달한 것과는 별개로 반드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훈련소집 기간 중에 해외체류 사유로 출국 예정인 사람은 별도의 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동원훈련을 연기한 사람은 재입영훈련을 받거나 동원미참자훈련을 받게 됩니다. ☞ (지방병무청 연락처)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 연기신청 → 지방병무청 동원훈련담당자 전화번호' 참조
전투복/ 전투화 대여 및 교체제도	1. 동원훈련 입영시 훈련 복장은 현역 착용기준에 준합니다.(전역시 지급받은 복장) * (기본복장) 베레모(또는 전투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이름표, 방상외피(야전상의: 동계) 2. 전투복과 전투화 대여 · 교체제도 또는 훈련복장 및 준비물에 대한 상세내용은 해당 소집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연락처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안내 서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대여)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지 않으면 훈련기간 동안만 대여 * (교체)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 지급
기 타	1. 통지서를 받은 이후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통지서를 보낸 지방병무청에 입영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와 지역예비군훈련 통지서를 함께 받은 사람은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보내는 사람

• 전화상담 ☎ 1588 - 9090
⇒ 0번(병무민원상담)

• 병무청 누리집
<https://www.mma.go.kr>

“캐릭터 또는 로고”

받는 사람

이 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와 소집점검에 대리해 출석한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평시 훈련용) 전시근로소집점검 통지서			
통지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예비군부대)			
입영일시	(4시간)		
입영장소			
「병역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점검에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전시근로소집 점검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예비군 복무 5~6년차에 대해 실시하며, 4시간 동안 부대편성 및 임무확인, 안보교육, 동원절차 등을 교육합니다.
2. 입영할 때에는 반드시 군 전역 시 지급받은 베레모(또는 전투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등을 착용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공인자격증, 여권 등)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3. 질병, 결혼, 각종 시험응시, 직계 존·비속 사망 등의 사유로 입영하기 어려운 때에는 입영 전일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소집점검) 연기신청」을 통해 입영 연기를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지)청에 정해진 연기원서를 우편·FAX로 송부 또는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전시근로소집 점검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지방병무(지)청 또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 바랍니다.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앞쪽)

처리기간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일 연기: 즉시
입영·소집일 연기: 2일

구 분	[]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일 연기 [] 입영·소집일 연기	
병역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통지서 수령인	본인과의 관계
병역사항	[]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 대상자 [] 현역 모집병(육군, 해군, 해병, 공군)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 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 대체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예비군대체복무소집 대상자 [] 기타 ()	
[]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재병역판정 검사일 연기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일 년 월 일	연기 후 희망일 년 월 일
	연기 사유	
[] 입영 ·소집일 연기	입영·소집일 년 월 일	입영부대(복무기관)
	연기 사유	재입영희망일(모집병만 작성) 년 월 일

「병역법」 제14조의3제6항,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29조, 제1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소집일자 연기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병무용 진단서(모집병은 일반진단서)	없음
	국외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	없음	여권발급 정보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위독·사망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졸업·수료(예정)증명서,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 근로자로 근무 중인 사람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접수한 사람	시험접수증(수험표) 사본	시험응시 여부 또는 1차 시험 결과
예비군 병력동원 훈련·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일자 연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이 어려운 사람	일반진단서	없음
	재감	경찰관서 또는 교도소장 발행 사실확인서	없음
	공무원, 공공단체 채용 및 면허·자격시험, 승진시험	응시원서 접수증(합격증) 사본	없음
	국가기관, 공공단체, 주요 기관 산업체 교육 중인 사람	교육 인사 명령서 사본	없음
	시설 직업훈련기관 교육 중인 사람	재원 사실 확인서	없음
	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본인 결혼·부모 회갑 또는 배우자의 출산	청첩장, 초청장 또는 의료기관 (일반)진단서	없음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자	참가 확인서	없음
	주요 업무 수행	주요 업무 수행확인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 사항

- 구분란의 해당사항에 √표시를 한 후 병역의무자란과 병역사항을 적습니다.
-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일 연기란에 √표시를 한 후 그 내용을 적습니다.
- 입영·소집대상자는 입영·소집일 연기란에 √표시를 한 후 입영·소집일, 입영부대(복무기관), 연기 사유, 재입영희망일(모집병만 작성)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병무용진단서

병록번호		연번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3.5cm×4.5cm)
	직업	성별 남 · 여	
진단 및 치료에 대 한 소견 등	병명(임상적 추정 【 】 , 최종진단 【 】)		질병분류기호
	발병·상해 연월일	발병 장소	초진 연월일
	발병(상해)의 원인		
	증상 및 질병(상해)에 대한 소견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현재까지의 일상적 생활 상태와 운동능력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 * []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합니다. []3개월 미만(주)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개월)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치료 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		
병명을 진단한 검사항목		검사 연월일	
진단 의료기관	병원·의원명		전화번호
	병원·의원 주소		
	의사면허번호 ()과 전문의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년 월 일장

○○병원장

직인

유의사항

1. 이 진단서는 병역처분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병역법」 제9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3.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 아래 구분란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구분	[] 아동양육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공동생활가정				
병역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주소				
보호시설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신고번호 제 호(년 월 일)			담당자 성명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보호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년 월)				
입소사유					
부모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그 밖의 사항	1.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아동으로 본 시설에 보호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2. 위 보호기간 중 본 시설에서 부 또는 모와 거주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부 또는 모와 거주하였을 경우 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년 월)				
	3. 위 부모가 본 시설에 보육사, 취사원, 시설운영원 등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재직사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년 월)				
위 사람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아동으로 본 시설에 5년 이상 보호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원장			직인		
위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 유의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국외여행허가 2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10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 1일
------	------	------	---

병역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국내 국외

국내 거주 중인 자 허가 신청	☐ 최초 허가 신청	여행기간	. . . ~ . . . (. 년 . 월 . 일간)		
		여행국명	여행목적		
	☐ 허가 기간 변경 신청	당초 허가내역	당초 허가기간	20 . . . ~ 20 . . . (. 일간)	
			여행 목적	여행국명	
		출국 전 허가기간 변경 신청	기간변경 요청기간	20 . . . ~ 20 . . . (. 일간)	

☐ 국외체류 중(일시귀국 포함)인 사람 기간연장 허가 신청	재외공관장 확인 : (인)		접수 및 확인번호	
	이전 허가사항	여행 목적	여행국명	
		병무청 허가번호	출국 연월일	
		병무청 허가기간	20 . . . ~ 20 . . . (. 일간)	
	기간연장 허가 신청	체재목적	체재국명	
		기간연장 요청기간	20 . . . ~ 20 . . . (. 일간)	

허가 취소	취소 사유(필요한 경우 작성):
-------	-------------------

국내 가족(친지 등 포함) 사항	성명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병역법」 제70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부터 제147조까지 및 제14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및 해외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체 법인의 추천서	없음
연수·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없음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없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없음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없음
질병치료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	없음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없음
국외이주의 경우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그 밖에 병무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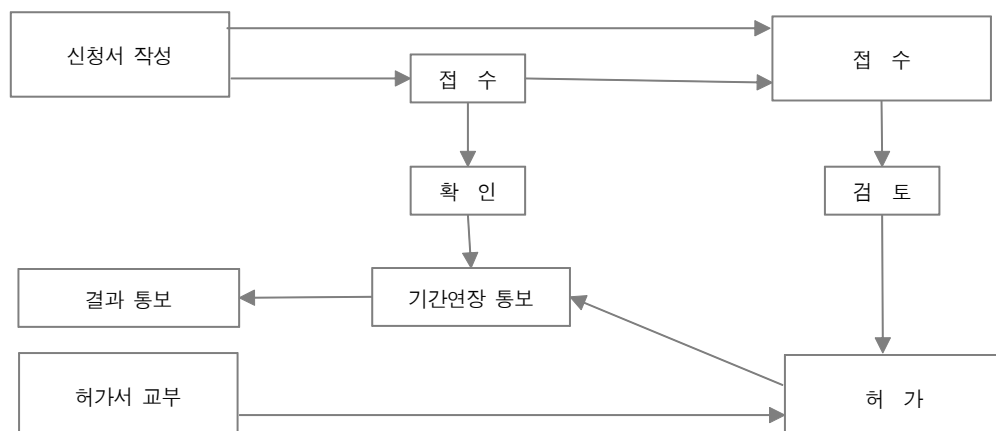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5항 및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및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제재내역
 - 공무원 및 임직원의 임용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40세까지)
 - 국외여행허가의 제한
- 인적사항 등의 공개
 -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함.

신청서 처리 절차



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 for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Please check the notice and documents attached and fill out the form. (Front)

Receipt No.	Date of receipt	Processing period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2 days Permission for extension of period of overseas travel: 10 days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1 day
-------------	-----------------	-------------------	---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Name		Date of birth
	Telephone No.		Mobile phone No.
	E-mail		
	Address	Address in Korea Overseas address	

Application for permission by person residing in Korea	☐ Initial application for permission	Period of travel	20 . . . ~ 20 . . . (days)	
	☐ Application for change of permission period	Name of travel country	Purpose of travel	
		Original permission details	Period of original permission	20 . . . ~ 20 . . . (days)
		Purpose of travel	Name of travel country	
		Application for change of permission period before departure	Period of change requested 20 . . . ~ 20 . . . (days)	

☐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person residing abroad (including temporary return)	Confirmation by the head of the diplomatic mission abroad:		Receipt and Confirmation No.	
	Previous Permission Details	Purpose of travel	Name of travel country	
		Permission No.	Departure date	
		Permission period	20 . . . ~ 20 . . . (days)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extension	Purpose of stay	Name of country of stay	
		Period of extension requested	20 . . . ~ 20 . . . (days)	

Revocation of permission	Reasons for revocation (fill in if applicable) :
--------------------------	--

Family details in Korea (including relatives, etc.)	Name	Relation ship	Address	Telephone No.	E-mail

I apply for []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the period) or []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the period), pursuant to Articles 70 (1) and (3)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nd Articles 145 through 147 and 147-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at Act.

Date: (mm-dd-yyyy)

Applicant

(signature or seal)

Relationship with the applicant:

To: Director of ○○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Head of Military Manpower Branch Office)

There are no additional fees for submitting the application.

210mm x 297mm [woodfree paper 80g/㎡]

Documents attached		
Category	Documents submitted by the applicant	Confirmation matters by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including off-season training) and overseas performance	A recommendation letter from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head of the pertinent school, the president of the Korean Sport and Olympic Committee, or a professional athletic affiliate corporation.	None
Internship, field study, and cultural exchange	A plan or permit by the relevant institution	None
Overseas dispatch and business trip	A certificate of overseas business trip or a written order of overseas dispatch by the head of the affiliated agency or the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None
Crew of intercontinental ships and intercontinental airliners	Employment contracts	None
Overseas employment	A certificate of employment verified by the head of the diplomatic mission abroad	None
Overseas medical treatment	A medical certificate for military service	None
Studying abroad	A certificate of admission or enrollment	None
Emigration	A confirmation of family residence	Certificate of reporting of emigration
Cases deemed necessary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Documents confirming the purpose of departure	None

Written Consent for the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I agree that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this case confirms the above confirmation matters of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through the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36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There are no fees, and if you do not agree,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relevant documents direct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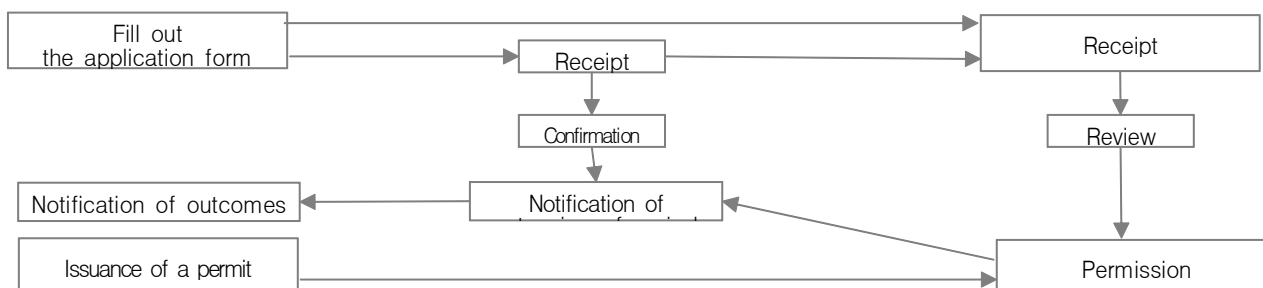
Applicant

(signature or seal)

Notice

- ☐ Measures for violators of the duty to obtain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 If a person who shall obtain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the period) pursuant to Article 70 of the Military Service Act violates this, he or she shall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nd sanctions as follow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76 (5) and 94 of that Act and Article 145 (4)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at Act.
 - Criminal punishment
 - Any person who has left the Republic of Korea or stays in a foreign country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prescribed in Article 70 (1) or (3) of the Military Service Act with a view to evading mandatory military service or being eligible for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mandatory military servic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but not more than five years.
 - Any person who has left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prescribed in Article 70 (1) or (3) of the Military Service Act, who stays in a foreign country, or who has not returned home within a permitted period without good caus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 Details of sanctions
 - Restrictions on the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and executive officers or employees, and on any permission, authorization, etc. for various government-authorized, permitted, or licensed business (up to the age of 40)
 - Restrictions on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etc.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matters regarding non-performance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etc. on the website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81-2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pplication processing steps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서

허가번호 제 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원구분					
여행목적			여행국명		
여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고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장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 위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반드시 귀국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 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5항 및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및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제재내역

－ 공무원 및 임직원의 임용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40세까지)

－ 국외여행허가의 제한

◦ 인적사항 등의 공개

－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함.

Permit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

Permission No.			
Name		Date of birth	
Address			
Resource classification			
Purpose of travel		Name of travel country	
Period of travel	(mm-dd-yyyy) ~ (mm-dd-yyyy)		
Note			

Permission is gran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70 of the Military Service Act

Date: (mm-dd-yyyy)

Director of ○○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Head
of Military Manpower Branch
Office)

Official
Seal

- ☐ You must return to the Republic of Korea within the permitted period, and if it is difficult to do so, you shall obtain permission for an extension of the period by 15 days before the expiration date.
- ☐ Measures for violators of the duty to obtain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 If a person who shall obtain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the period) pursuant to Article 70 of the Military Service Act violates this, he or she shall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nd sanctions as follow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76 (5) and 94 of that Act and Article 145 (4)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at Act.
 - Criminal punishment
 - Any person who has left the Republic of Korea or stays in a foreign country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prescribed in Article 70 (1) or (3) of the Military Service Act with a view to evading mandatory military service or being eligible for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mandatory military servic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but not more than five years.
 - Any person who has left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prescribed in Article 70 (1) or (3) of the Military Service Act, who stays in a foreign country, or who has not returned home within a permitted period without good caus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 Details of sanctions
 - Restrictions on the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and executive officers or employees, and on any permission, authorization, etc. for various government-authorized, permitted, or licensed business (up to the age of 40)
 - Restrictions on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etc.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matters regarding non-performance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etc. on the website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81-2 of the Military Service Act.

치료(치료비 지급) 신청서(병역판정검사자 등 신청용)

* 신청서 작성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공통)	병역(입영)판정검사 일자	병역(입영)판정검사 장소
	부상 발생 연월일	부상 발생 장소
	부상명	
	부상 원인	
	부상 발생 경위 *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하고 기재할 난이 부족하면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 신청	치료 지정 의료시설	치료 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 치료비 지급 신청	치료 의료시설	치료비 신청 금액

「병역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치료(치료비 지급)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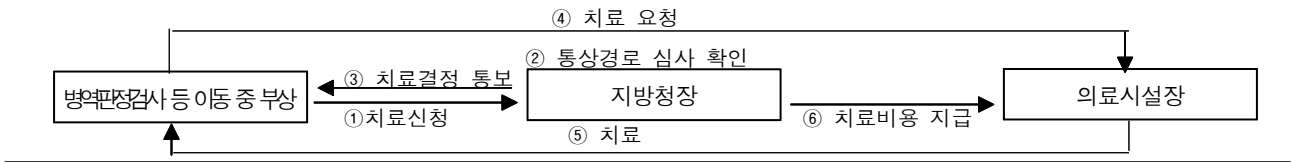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귀하

첨부서류	■ 치료 신청 : 진단서 1부 ■ 치료비 지급 신청 : 진단서 및 치료비(약제비 포함) 내역 등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발생 경위는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그 검사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 중이거나 검사 후 지체 없이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에 한하여 치료(치료비 지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의 작성사항 중 치료를 받으려는 의료시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의료시설 중에서 선택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민간 의료시설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치료기간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의 치료기간과 동일하게 적거나, 기간 단위로 치료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지방병무(지)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치료(치료비 지급)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요구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치료비는 해당 부상으로 의료(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데 소요된 실제 비용과 그에 따른 약제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판정검사 등과 관련이 없는 이전 알고 있는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비용을 환수합니다.	
업무 처리절차(치료 신청 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u>별지 제132호서식</u> 에 따른다.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① ----- ----- <u>별지 제132호서식</u> (영문신청의 경우에는 <u>별지 제132호의3서식</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받아 허가를 한 경우에는 <u>별지 제129호서식</u> 의 국외여행허가자 명부에 기재하고 <u>별지 제134호서식</u> 의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 ----- ----- ----- <u>별지 제134호서식</u> (영문신청의 경우에는 <u>별지 제134호의2서식</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9조(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 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u>별지 제132호서식</u> 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9조(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 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 ----- ----- ----- ----- <u>별지 제132호서식</u> (영문신청의 경우에는 <u>별지 제132호의3서식</u>)----- -----.

제111조(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
기간 연장) ① 영 제147조제1항
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
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
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를 포함한다)에 체재목적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영 제147조제1항 단서에 따
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이 그 기
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
지 제134호서식의 국외여행기
간 연장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제111조의2(국외여행허가 취소 신
청서의 제출) 영 제147조의2제1
항제6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
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32
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

제111조(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
기간 연장) ① -----

----- 별지 제132
호서식(영문신청의 경우에는 별
지 제132호의3서식)-----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
지 제134호서식(영문신청의 경
우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
-----.

제111조의2(국외여행허가 취소 신
청서의 제출) -----

----- 별지 제132
호서식(영문신청의 경우에는 별
지 제132호의3서식)--.

제11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

<u>확인서 등) 영 제15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는 별지 제138호서식, 치료 신청서는 별지 제139호서식에 따른다.</u> <u><신 설></u> <u><신 설></u>	<u>확인서 등) 영 제15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이미 치료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u> <u>1. 영 제153조제1항 및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38호서식의 부상(질병)확인서, 별지 제139호서식의 치료 신청서</u> <u>2. 제15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38호서식의 부상(질병)확인서, 별지 제139호의5서식의 치료(치료비 지급) 신청서</u>
---	---